

제 276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4.3.4.)

조례안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혜진]

목 차

| | | | |
|---|--|---------|----|
| 1 |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무과] | 1 |
| 2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무과] | 6 |
| 3 |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경제기업과] | 16 |
| 4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문화관광과] | 22 |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4. 2.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4. 2. 20.

2. 제안이유

-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면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인 지방세 감면사항 중 서민생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3. 주요내용

- 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 연장함(안 제2조·제5조·제7조·제9조)
 - 1)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 2) 지역특산물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3)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4)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나. 인용법령 개정, 약칭표현에 따른 용어 정비함(안 제4조·제6조)
- 다. 감면기한 만료에 따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사항 삭제함(안 제9조의2·별표)
- 라.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함(안 제10조)

- 1)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만 신청한 경우: 300원 ⇒ 500원
- 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600원 ⇒ 1,000원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55조·제92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2. 2.~2. 1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필요성 : 필요

- 감면기한 연장 및 일몰시기 통일, 용어정비,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으로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함.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55조, 제75조의2, 제78조의3, 제92조의2, 제17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 감면기한 연장에 따른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 세입감소가 예상되나 2024년 감면 추계 비용이 15,329천원 정도임

※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

○ 검토결과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일몰 기한이 만료된 ▲시각장애인 소유 차량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 ▲소상공인 건축물 임대 등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시 지방세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
- 거창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023년 8.51%, 2024년 7.94%로 지난해 대비 0.57% 감소하는 등 매년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국세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정채 등 지방세수의 감소에 따른 부담이 예상될 수 있으나, 감면 규모가 작아 재정감소는 크지 않아 보임.
-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 세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들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③ 정부는 제43조에 따른 환지, 보류지 및 체비지에 대해서는 국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㉕부터 <53>까지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6조(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③ 정부는 제43조에 따른 환지, 보류지 및 체비지에 대해서는 국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4. 2.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4. 2. 20.

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1. 제안이유

- 인구유입 정책 실효성과 창업농 재배역량 향상, 농업경영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유통·생활환경·교육·문화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사업명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 위치 : 거창읍 대평리 910-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4. 5. ~ 2025. 6.
- 취득면적 : 55필지, 56,182m²
- 사업비 : 29,000백만원(국 14,000, 도 1,200, 군 13,800)
(부지기반조성 2,500, 온실신축 11,550, 에너지시설설치 5,950, 용역비 100, 토지매입비 8,900)

- 사업내용 : 토지조성 5.6ha, 온실신축 4ha, 에너지시설설치
 - 토지 기반조성 : 성토, 용수, 전기, 도로구축 등
 - 온실신축 : 1ha 연동형 비닐온실 4개소, 시험동 및 관리동 1개소
 - 에너지시설설치 : 농업용 지열, 공기열 히트펌프 등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 55필지, 56,182㎡ / 첨부1 참조

다. 추진경과

- 토지소유자 사전 협의 : 2023. 9. ~ 10.
- 취득재산 감정평가 : 2024. 1.

라. 향후계획

- 추경예산 편성 및 행정절차 이행 : 2024. 4.
- 토지보상협의 매수 : 2024. 5.

마. 기대효과

-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과 청년인구 유입, 지역 발전 방안
-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통해 농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책자 참조

3.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르면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취득하려는 토지는 거창읍 대평리 910-1번지 등 55필지, 56,182㎡로, 기준가격은 19억 4천여 만원이나 지난 1월 감정평가 결과 평균 154,000원/㎡ 정도임
- 또한, 인근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액은 평균 152,667원/㎡로 공시지가와 비교해 볼 때 4-5배 정도로 높음.
- 현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통해 농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목표로 설정하고, ‘스마트팜’을 통해 청년을 농업·농촌으로 유입하고자 오는 2027년까지 40세 미만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임.
- 우리군은 ‘24~‘26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추가 공모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본 사업이 선정될 시 고령화, 인력부족,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24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추가 공모사업 >

- ❖ (구성주체) 시·도(시·군)
- ❖ (구성기간) '24~'26년(사업기간 3년)
- ❖ (지원규모) 1개소, 개소당 총 200억원(국비140, 지방비60)
 - *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
- ❖ (지원조건) 국비 70%, 지방비 30% * **부지매입은 국고 지원 제외**
- ❖ 우리군은 현재 추가 공모에 신청하였으며, 2월말 발표 예정
 - * 기존 선정 내역 : 12개 지역
 - 2020년 : 제천, 평창
 - 2022년 : 신안, 양구, 영천, 장수
 - 2023년 : 김제, 밀양, 삼척
 - 2024년 : 서산, 영암, 예천

② 거창韓 청년 귀농홈 지원사업 청년귀농인 임시거주용 시설 조성

1. 제안이유

- 청년 귀농인의 초기 정착 부담 경감을 위한 임시거주용 시설 조성으로 청년층 인구 유입 및 지방 인구소멸 위기 극복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건축규모 : 10호(호당 40㎡내외) / 가조 7호, 웅양 3호
 - 면적 : 400㎡정도(가조 280㎡, 웅양 120㎡)
- 위 치 : 2필지
 - 가조면 기리 535-1(기리창조적 체험휴양마을, 구. 석강초)
 - 웅양면 한기리 915(하성단노을생활문화센터, 구. 하성초)
- 사 업 비 : 1,200백만원(지방소멸대응기금 1,200)
- 주요기능 : 청년 귀농인 임시거주용 시설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천원)

| 구분 | 재산종별 | 재 산 의 표 시 | | | 수량 | 기준가격 | 취득시기 | 취득사유 | 재 산 소유자 |
|--------|------|--------------|--------|-----|-----|-------------------------|------|-----------------|---------|
| | | 소 재 지 | 용도 | 면 적 | | | | | |
| 계 | | | | 400 | | 1,200,000 | | | |
| 취득(신축) | 건물 | 가조면 기리 535-1 | 주택(숙소) | 280 | 7개동 | 840,000 (동당 120,000) | 2024 | 거창韓 청년 귀농홈 지원사업 | 거창군 |
| | | 웅양면 한기리 915 | 주택(숙소) | 120 | 3개동 | 360,000 (동당 120,000) | 2024 | | |

※ 사업대상지 2개소는 기존 공유지 활용

다. 추진경과

- 2023. 11. :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선정
- 2024. 1. : 사업대상부지 선정

라. 향후계획

- 2024. 2. ~ 3.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24. 3. ~ 5. : 실시설계 추진
- 2024. 5. ~ 12. : 착공 및 준공

마. 기대효과

- 청년 귀농인 임시거주용 시설 조성으로 귀농귀촌 교육 및 홍보와 연계 추진하여 청년 귀농인 유치 및 안정적 정착 지원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첨부 참조

3.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청년귀농인 임시거주용 시설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취득재산은 건축물 10동, 기준가격 12억원에 해당되므로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군의회의 의결 대상임.

- 본 사업은 ‘24~’26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추진하며, 가조면 기리창조적 체험휴양마을에 7개동과 웅양면 하성단노을생활 문화센터에 3개동을 신축할 계획임.
- 현재 우리군 면지역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50%에 달하며, 농업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역소멸을 막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의 확보가 가장 시급한 농정 과제로 보여짐.
- 이에, 청년들을 위한 귀농홈을 조성한다면 생활비와 운영자금, 농지와 시설확보 등 초기 자금 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이 우리 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그만큼 정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장기적으로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를 고려해 최소 3인이 생활할 수 있고, 임대형 스마트팜 등 일자리와의 연계성이 높은 곳에 단독주택형 임대주택을 지원한다면 농촌 청년의 주거 수요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

③ 상동 도시재생사업(상동 아롬드리 숲골 어울림센터) 변경

1. 제안이유

- ‘20년 국토부 공모선정 “상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상동 아롬드리 숲골 어울림센터」 주변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도시재생 시설의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95-3번지
- 사업기간 : 2021. ~ 2024.
- 사 업 비 : 600백만원(토지, 지장물, 이주비 포함)
- 취득면적 : 313㎡(토지편입면적)
- 사업내용 : 주민공동체 활동 공간 조성(주차장 및 공원)

나. 취득재산세부내역

(단위:㎡, 천원)

| 구분 | 재산종별 | 재 산 소 재 지 | | | | 용도지역 | 기준가격 (공시지가) | 평가금액 | 비고 |
|----|------|-----------|----|------|------|-------------------|------------------|--------------------|----|
| | | 소재지 | 지목 | 지적면적 | 편입면적 | | | | |
| 취득 | 토지 | 상림리 95-3 | 대 | 313 | 313 | 제2종 일반 주거지역 | 207,832 (664) | 408,465 (1,305) | |
| | 건물 | 상림리 95-3 | 주택 | 109 | 109 | | 170,000 | - | |

※ 토지평가금액 : 2021년 상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감정평가금액 적용

※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건물 산정금액 적용

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역(사업면적 874㎡ → 1,187㎡(313증))

| 구분 | 재산종별 | 재 산 의 표 시 | | | 기준가격 (천원) | 취득 시기 | 취득 사유 | 비고 |
|----|------|-----------|-----|---------------|--------------|----------|-------|----|
| | | 소 재 지 | 지 목 | 면 적 (㎡) | | | | |
| 총계 | | | | 1,187 /286 | | | | |

| 구분 | 재산 종별 | 재 산 의 표 시 | | | 기준가격 (천원) | 취득 시기 | 취득 사유 | 비고 |
|------------|-----------|-------------------|-----|-------------|--------------|-------------|--------------------------------|-----|
| | | 소 재 지 | 지 목 | 면 적 (㎡) | | | | |
| 기존 | 토지/ 건물 | 소계 | | 874/ 177 | | | | |
| 기존 | 토지 | 거창읍 상림리 96-1번지 | 대 | 271 | 353,655 | '21년 4월말 | 생활 SOC 확충 및 주민 공동체 공간 조성 | 취득 |
| | | 거창읍 상림리 92번지 | 대 | 553 | 222,693 | | | 거창군 |
| | | 거창읍 상림리 95-1번지 | 대 | 50 | 19,900 | | | 거창군 |
| | 건물 | 거창읍 상림리 96-1번지 | 경로당 | 177 | 108,064 | | | 거창군 |
| 변경 (추가) | 토지 | 거창읍 상림리 95-3 | 대 | 313 | 207,832 | '24년 5월경 | | 취득 |
| | 건물 | | 주택 | 109 | 170,000 | | | |

라. 추진경과

- 2020. 12. :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선정
- 2021. 6.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22. 12. : 어울림센터 착공
- 2023. 12. : 토지소유자 보상 요청
- 2024. 1. : 감정평가 의뢰

마. 향후계획

- 2024. 4. ~ 5. : 제1회 추경예산 확보 및 협의보상 완료
- 2024. 5. ~ 6. : 건축물 철거 시행

바. 기대효과

- 어울림센터 부지 확장으로 경관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등 : 첨부 참조

3.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상동 도시재생사업 주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취득재산은 거창읍 상림리 95-3번지 토지와 건축물로 토지 편입면적은 313m²임, 본 사업에 대해서는 2021년 6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기존면적(874m²) 대비 35.81%가 증가하였으므로 군의회의 의결 대상임.
-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상동 아릅드리 숲골 어울림 센터 앞에 위치하여 신축 건물의 시야를 가리고, 차량진입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어,
- 매입을 통해 대로변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어 공동체의 활동공간으로 활용도가 훨씬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4. 2.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4. 2. 20.

2. 제안이유

- 산업자원부 지원으로 산업단지에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다양한 시설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기능 및 시설을 정함(안 제2조·제3조)

- 1) 기능: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근로자와 군민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등
- 2) 시설: 문화 및 체육, 편의, 회의 및 교육, 사무 등을 위한 시설

나. 휴관일, 이용신청, 이용의 제한을 정함(안 제4조~제6조)

다. 이용료 및 감면, 반환을 정함(안 제7조·제8조)

라. 위탁을 정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제161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2024년도 예산 2,144백만원 확보(국비 1,640백만원, 군비 504백만원)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 24.~2. 1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제정의 필요성 : 필요

-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내 문화 및 체육시설, 회의와 교육, 사무 등을 위한 공간을 배치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의 이용신청, 이용료, 사용 시간 등 최소한의 규정이 필요함.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제153조, 제156조, 제161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축 및 시설비용에 5,560백만원, 운영비용 보조에 매년 4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조문 내용의 적합 여부 : 적합

-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기능 및 시설, 휴관일과 이용 신청, 이용료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조문으로 구성하였음.

○ 검토결과

-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2022년 5월 산업통장자원부가 지원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2022년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
- 승강기베스트밸리 내의 남상면 대산리 2376번지에 총사업비 5,560백만원이 소요되며,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다목적체육시설은 4월, 복합문화시설은 12월에 준공 예정임.
 - * 건물규모 : 1동, 3층 / 연면적 1,320m²
- 문화, 체육, 편의, 회의 및 교육 등 다양한 시설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뿐만 아니라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세부 사항을 정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일반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어 여가 선용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속적으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경제성을 고려해 볼 때 위탁 등 운영주체를 발굴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서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상과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 시설의 종류 |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
| 1. 고궁 및 능원 | 100분의 100 |
| 2. 국공립 공원 | 100분의 100 |
| 3. 독립기념관 | 100분의 100 |
| 4. 전쟁기념관 | 100분의 100 |
|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100분의 100 |
| 6. 국공립 수목원 | 100분의 100 |
| 7. 국공립 자연휴양림 | 100분의 100 |
|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 100분의 50 |
|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100분의 50 |

참고2

타 지자체 관련(유사) 조례 제정 현황

| 자치단체 | | 법규명 | 공포일자 | 비고 |
|------|-----|---------------------------------|------------|----|
| 경남 | 사천시 |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 2023.7.6. | 제정 |
| 전남 | 담양군 |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2023.11.7. | 제정 |
| | 영암군 | 영암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 2022.11.3. | 제정 |
| 전북 | 정읍시 |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 센터 운영 조례 | 2023.8.9. | 제정 |
| 충북 | 음성군 |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 2022.3.7. | 개정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4. 2.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4. 2. 20.

2. 제안이유

-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시행 2024. 5. 17.)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를 사용하거나 인용하는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문화재’ 용어 및 인용법명을 변경함(안 제1조~제9조)
 - 1) 문화재 ⇒ 문화유산
 - 2) 「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나.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28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 23.~2. 1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제정의 필요성 : 필요

- 2024년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 우리군 조례 중 ‘문화재’ 관련 용어를 사용하거나 인용하는 조례를 일괄정비하여 상위법령과 일관성을 갖도록 해야 함.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국가유산기본법」 제1조, 제3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정부조직법」 제36조
- 「지방자치법」 제28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 용어와 인용법명을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추가 재정부담은 없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으로 역사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현재까지 보존·유지하여 왔으나,
- 이제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위상과 다양한 전통 유산의 가치를 증진시켜 나갈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 소중한 유산을 아우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국가유산기본법」(법률 제19409호, 2023.5.16.)이 제정되어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 「국가유산기본법」과 관련되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입법 경제성을 높이고, 상위 법령과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우리군에는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적을 건조물에 한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문화재라는 개념을 국가유산이라는 포괄적 정책으로 변화를 추진하는 데에 발맞춰

- 향토문화재 역시 건조물 뿐만 아니라, 역사적·학술적·문화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것과 집단의 기억이 녹아있는 장소, 사건·인물 등 인위적이고 자연적인 모든 것을 지역유산으로 확장시켜 보존·관리해 나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 국가유산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부 칙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 정부조직법

제36조(문화체육관광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국가유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유산청을 둔다.

④ 국가유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